

의안번호	2219761
의 퇴 인	윤준병의원
회 답 일	2026.9.18.
추계번호	26D3297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4조의3 조(통장·이장에 대한 수당 및 지 원)	-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장 및 이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함	의무규정
		-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 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상해나 직무로 인 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통장 및 이장의 재 난지원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활동비를 지 급할 수 있음 ※개정안은 실비와 수당 및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도록 하고,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4조의3(통장·이 장에 대한 수당 및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 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통장·이장에 대한 수당 및 지원(안 제134조의3)

- 개정안은 통장·이장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, 보상금,
재난지원활동 관련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-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은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¹⁾하고 있으나 실비·수당·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
- 다만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훈령)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훈령 제449호)

제4조(기준경비) 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·의정운영공통경비·의회운영업무추진비·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·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.
2.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.
3.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.
4. 통장·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.

[별표 4] 통장·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

① 경비성격: 통장·이장·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

② 기준액

통·리장: 기본수당 월 400,000원 이내, 상여금 연 200%,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,000원(월 2회)

반장수당: 연 50,000원

「세종특별자치시 이·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」(※ 일부 조례 예시)

제4조(실비변상) ① 이·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, 월정수당은 읍·면·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이·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편의제공) 이·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·면·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제6조(역량강화 및 사기진작) 이·통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.

1. 단체상해보험 가입
2. 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 물품
3. 국내·외 연수(단,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모범 이·통장으로 선발된 경우에 한한다)
4. 이·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, 식견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

- 1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- 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2026년 9월 기준 전국 통장은 62,734명, 이장은 38,090명으로 총 100,824명임
- 통장·이장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, 2025년 말 기준으로 기본수당 월 40만원 등 1인당 연간 608만원이 지급되고 있음
 - 기본수당 월 40만원 이내, 상여금 200%,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 지급
- 위 수당 외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녀장학금, 상해보험 등이 지원되고 있음
 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2025년 전국 228개 지방정부(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제주·세종) 중 이·통장 상해보험을 가입한 지방자치단체가 221개, 미가입 지방자치단체가 7개임(이·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금액은 99.6억원이며, 가입비는 지역별로 상이함)
 - ※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7개 시·구는 대체보험(구민안전보험 등), 재해위로금으로 지원
- 개정안에 따라 통장·이장에게 실비 및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거나 보상금 및 특별활동비가 새로이 지급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은 실비·수당·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규정될 지급기준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